

#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 주요내용과 행정사무감사 기법



**강 인 태(법제심사담당)**

**[2016. 10. 26.]**

#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  
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1.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 ▣ 비윤리-합법적인 부패 영역의 축소

- 청탁금지법은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적인 부패 영역을 축소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 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
- 부패의 개념은 사회의 문화적 배경,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음
  - ※ 175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인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전통적 의미의 부패)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과 같이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
  - (최근의 부패 개념)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는 물론이고, 비록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향

## ▣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의 상승 및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화
  -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이나 대가와 결부되지 않은 청탁행위 자체도 부정부패의 시발점으로 인식
- 다양화·은밀화·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 반부패 법령의 규제 사각지대 보완 필요
  - 도덕이나 윤리에 맡겨 둘 수만은 없고 법제도를 통해 새로운 윤리와 도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

### 〈기존 법체계의 한계와 청탁금지법의 보완 사항〉

구분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 사항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 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li> <li>●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시에만 처벌</li> <li>●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 새로운 부패 규제 곤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li> <li>●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li> <li>●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li> </ul>
공직자윤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li> <li>● 적용 대상을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법제화</li> <li>●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li> </ul>
공무원 행동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별칙조항 신설 불가능</li> <li>●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li> <li>● 헌법기관은 자체 규칙으로 위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li> <li>● 필요적 징계로 강화</li> <li>●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li> </ul>
부패방지 권익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익위 설치·운영, 부패 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제법으로 기능</li> </ul>

## 2. 청탁금지법의 법체계 및 주요 규율 행위

### ▣ 청탁금지법의 체계

- 총 5개 장, 24개 조문
- 2016. 9. 28. 시행

### ▣ 청탁금지법의 주요 규율 행위 체계

1.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제7조)
2.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제11조)

# 3.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 가.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포함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3.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4.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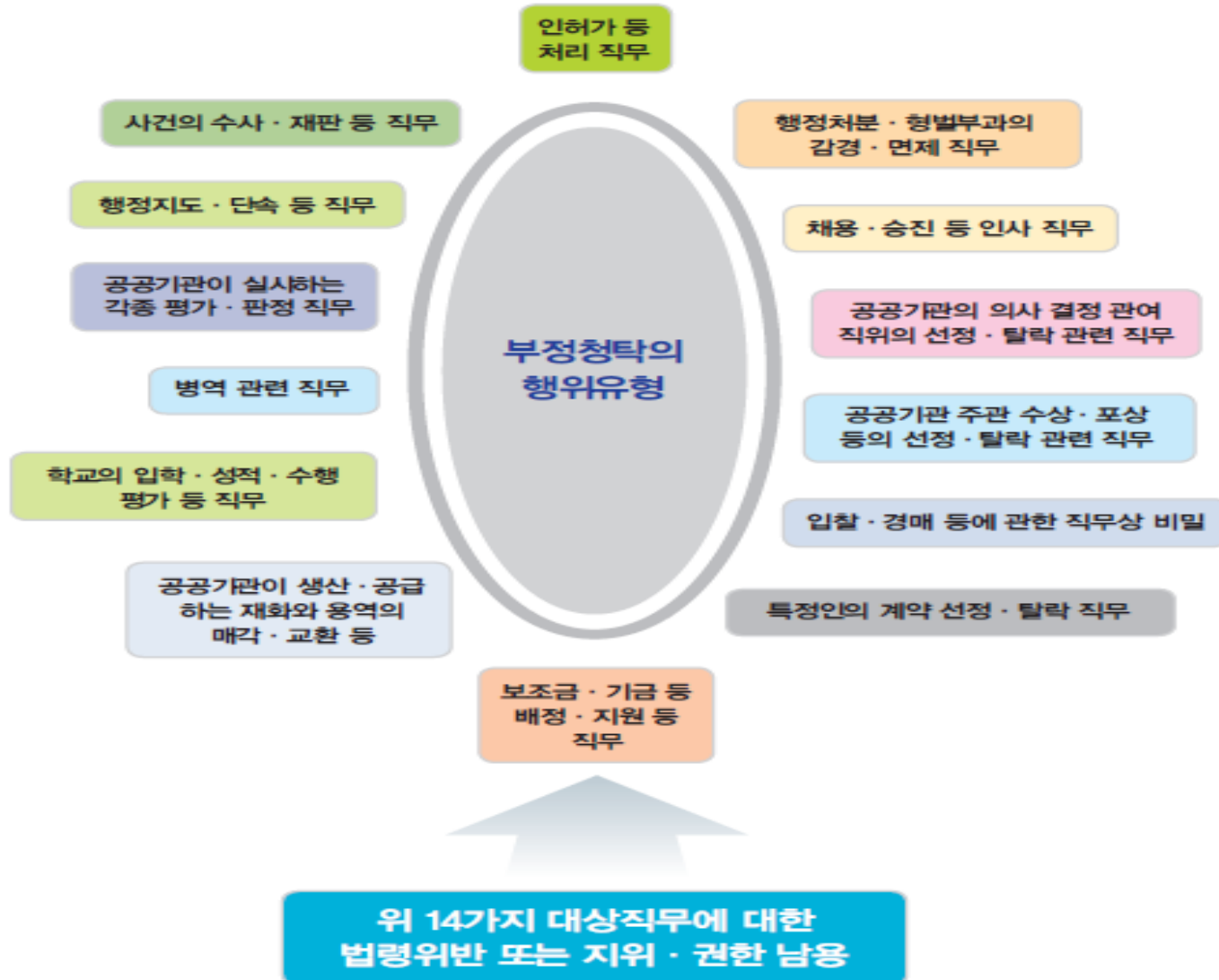
### ▣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5.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촉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 부정청탁 예외 사유를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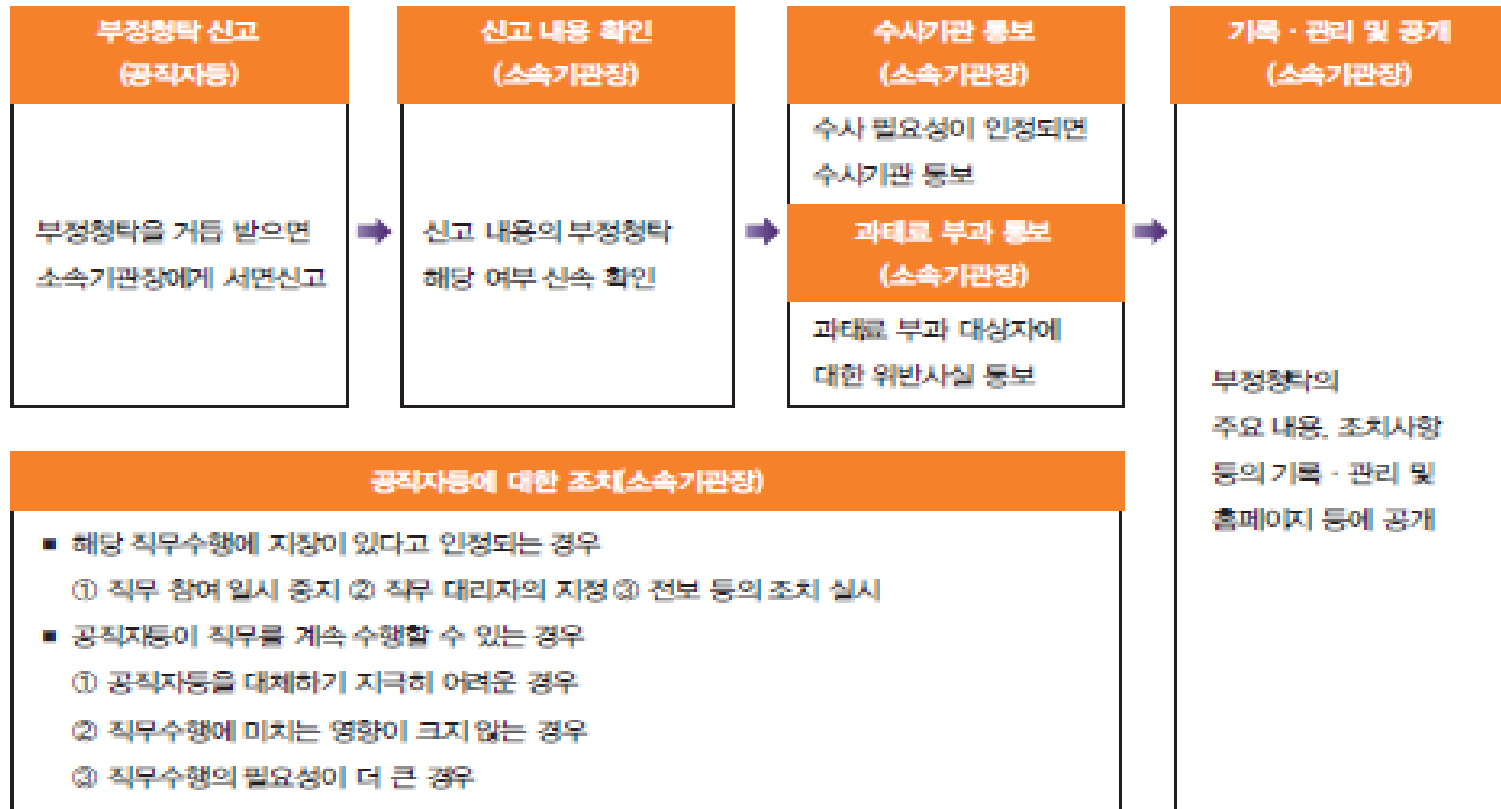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6. 위반 시 제재

행위 주체		구성요건		제재 수준
		유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행위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 인	제3자를 위하여 부정행위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행위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부정행위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 8.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수수 금지 물품등 및 처벌 수준

- ① 공직자등이 ② 동일인으로부터 ③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④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형사처  
벌 대상
- ①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②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요구 또는  
약속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8. 금품등의 수수 금지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 9.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가액기준(시행령안 제6조, 별표 1 ) >

제6조(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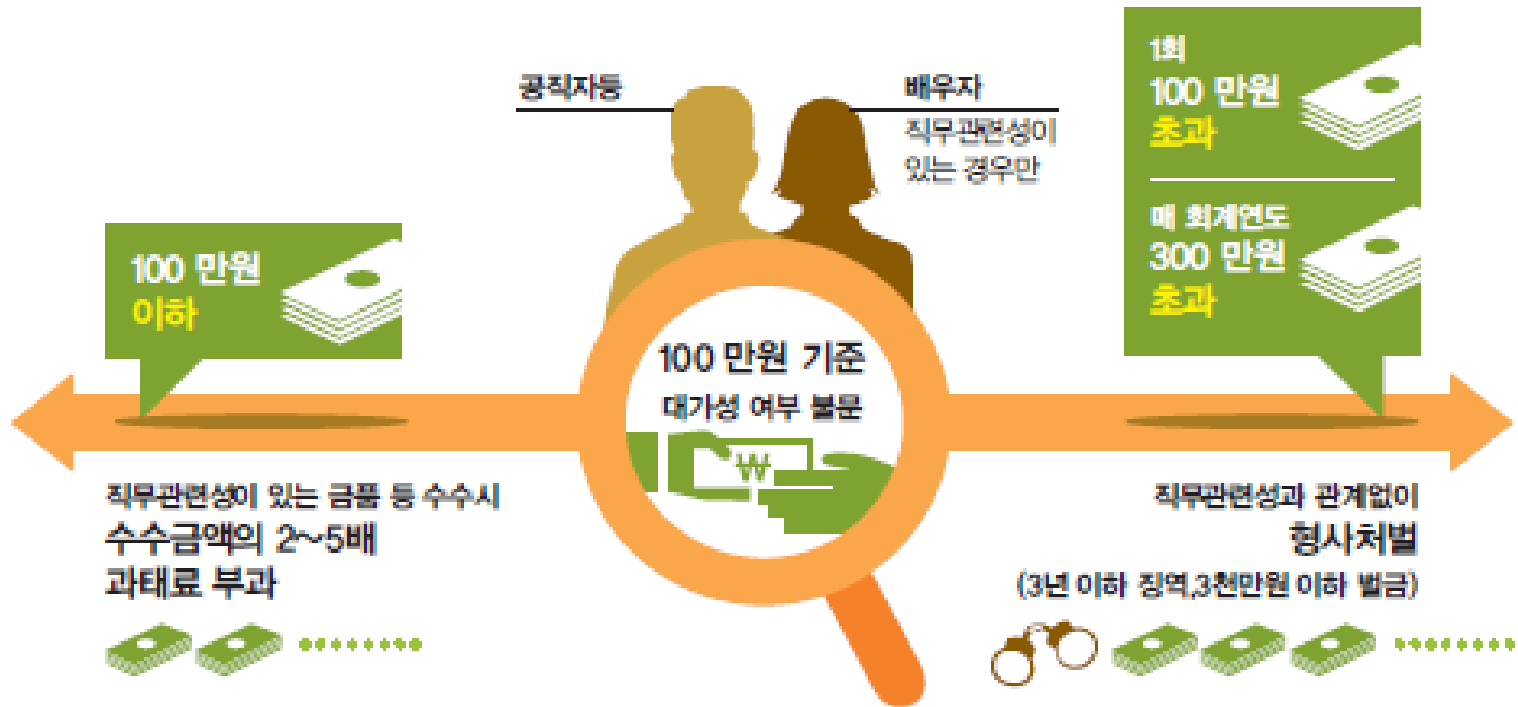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제6조 관련)

1.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2. 금품등의 종류
  - 가.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 나.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 다.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 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 가목의 음식물과 나목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5만원으로 한다.

# 10.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 의무

- 공직자등 자신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다만,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도록 해야 함
  - ※ 인도하는 경우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4)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 공직자등이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함에 따라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지체 없이' 하였는지가 중요

##### ※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다만,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 금품 등의 수수 관련 법 적용



## ▣ 직무관련성(X), 대가성(X)

- 동일인으로부터 한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금지

## ▣ 직무관련성(O), 대가성(X)

- 100만원 미만의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처벌 X)

## ▣ 직무관련성(O), 대가성(O)

- 1원이라도 금품 등 수수금지(형법상 뇌물수수죄 성립)

# 11.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 11.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상한액(시행령안 제9조, 별표 2 ) >

제9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1.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	40	30	20

-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은 구분된 직급에 상응하는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을 포함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 (3)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다.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및 제한

-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 있음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 ※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사전 신고 불필요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 ▶ 라.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라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12. 징계 및 벌칙

유형	위반행위	제재 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3. 사례

사례  
1-1

## 토지형질변경허가 직접 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토지 소유자 A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청탁



군형 담당 공무원 C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13. 사례

사례  
1-2

## 제3자(공직자등)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군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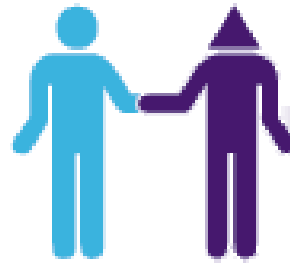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13. 사례

사례  
1-3

## 제3자(일반인)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친구인 회사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토지 소유자 A



친구 회사원 B



군청 담당 공무원 C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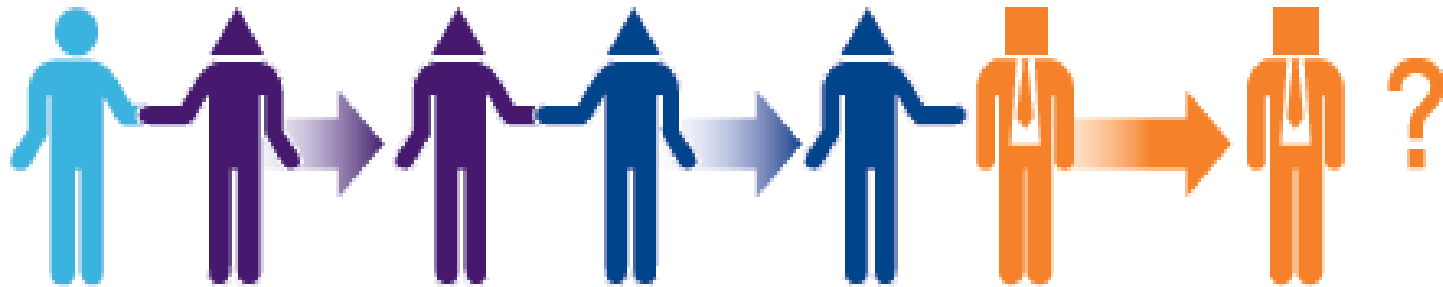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13. 사례

사례  
1-4

## 복수의 제3자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토지 소유자 A

친구 B

지방세 담당 공무원 D

군형 담당 공무원 C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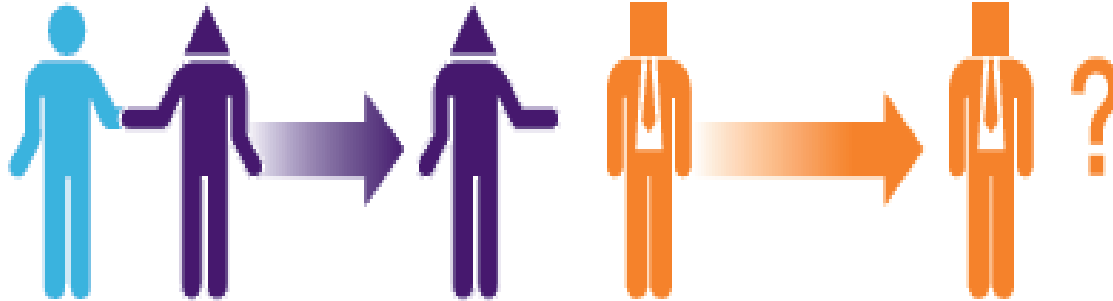


# 13. 사례

사례  
6

## 보조금 부정청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 A

지방의원 B

보조금 담당자 C

1천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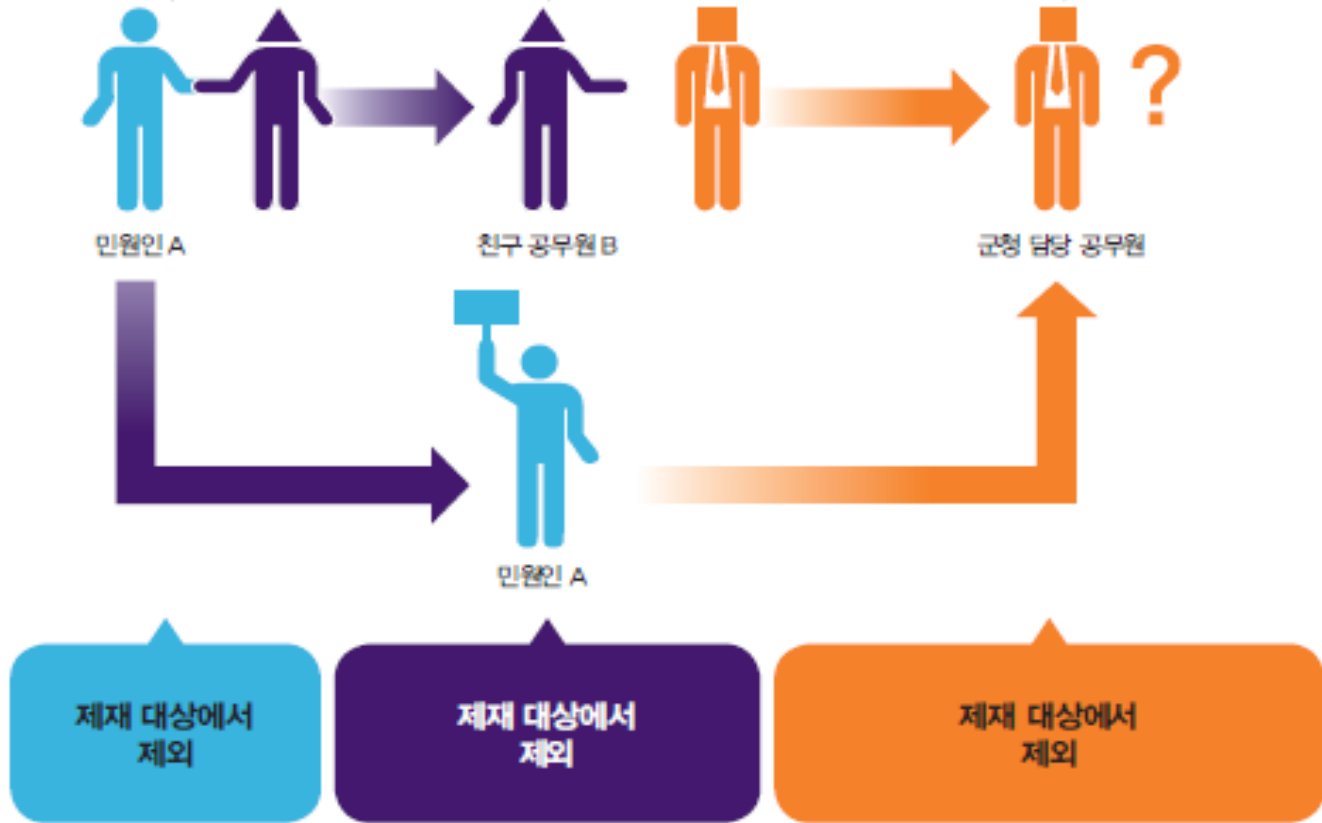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13. 사례

##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음.  
그 후 민원인 A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구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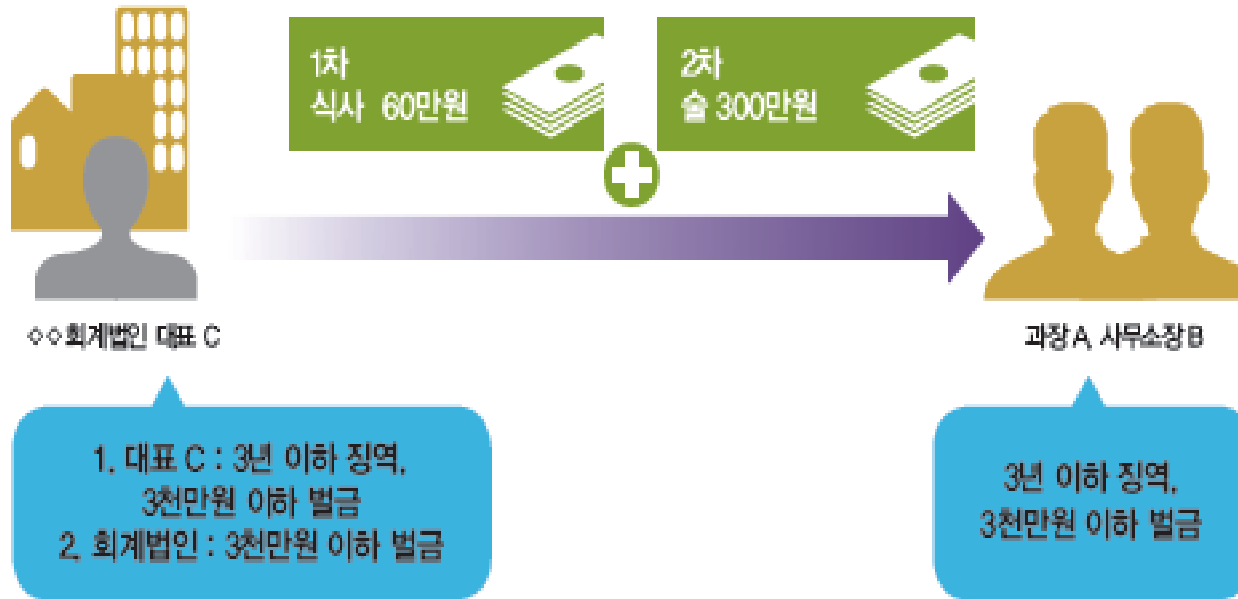


# 13. 사례

## 사례 2

### 1회의 의미 관련 사례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향응을 받은 경우 실제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하지만 각자의 소요비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13. 사례

사례  
3

## 여러 종류의 금품등 제공 사례

중앙부처 국장인 A는 작년 5월경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 B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접대 받았고, 같은 해 7월경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는데, A와 B는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 공무원 A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두 차례 받았으나 직무 관련이 없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제공자 대기업 임원 B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두 차례 제공하였으나 직무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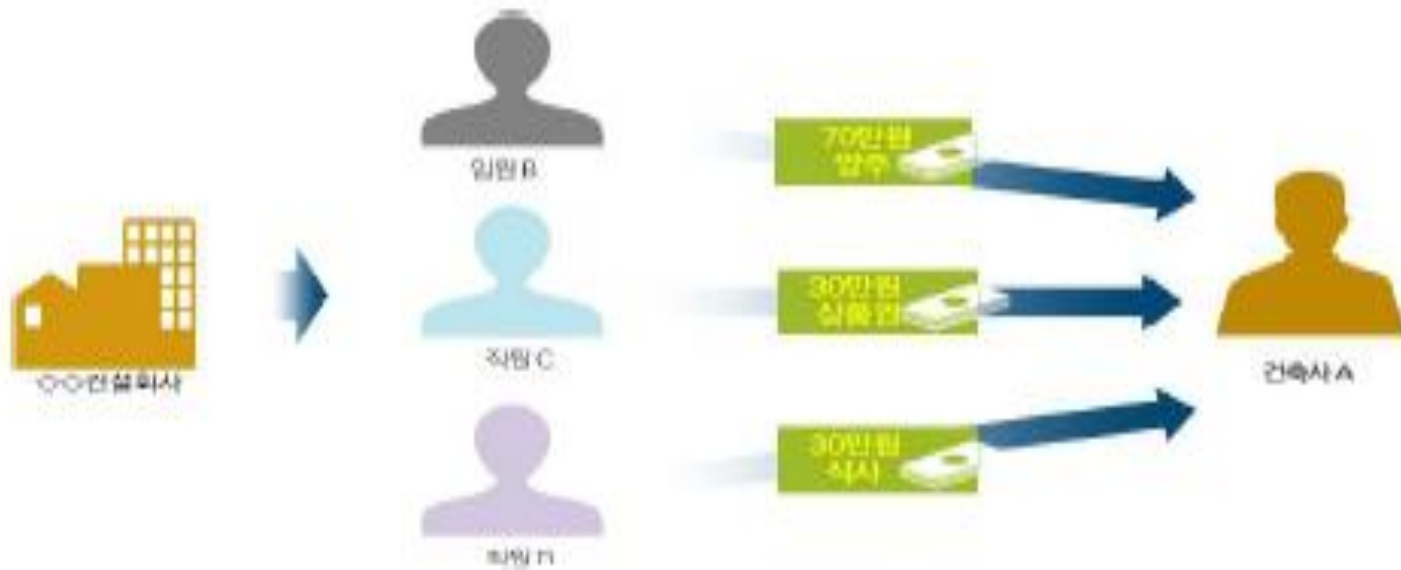


# 13. 사례

사례  
4

## 동일인 관련 사례

○○도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건설회사(주)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음.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A에게 ◇◇건설회사(주)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였고,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



1. 건축회사 대표이사 70만원 알주  
2. 건축회사 직장인 30만원 임용권  
3. 건축회사 주식자 30만원 주식  
4. 건축사

# 13. 사례

사례  
1

## 형사처벌 대상인 배우자의 금품 수수

지방자치단체장(시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4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 1)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지 못한 경우
- 2)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고 신고한 경우





**Q :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을 통해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을 경우, 이는 부정청탁의 예외 조항인 5조 2항 2호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되는가?**

**A : 아니다. 국민 신문고 등 정식 민원창구를 통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접촉했다면, 이메일 주소가 홈페이지에 적시돼 있었다 하더라도 공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정청탁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청회나 집단시위 등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요구한 것이 5조 2항 2호에서 말하는 예외에 해당된다.**



Q : 부정청탁이 **성사 되지 않아도 처벌** 받는가?

A : **그렇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아 실제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면 부정청탁 성사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다.

Q : 부정청탁이 담당 공무원과 **과장·국장의 결재를 거쳐 이뤄졌다면 셋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인가?

A : **그렇다.** 단,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재라인에 실제 이름을 올렸다면 부정청탁을 받은 직무 수행자에 해당**된다.

# 14.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14.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14. 공직선거법

## ▣ 기부행위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제12조 제1항)

# 14. 공직선거법

## □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 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② 의례적인 행위
- ③ 구호적 자선적 행위
- ④ 직무상의 행위

# 14. 공직선거법

## ▣ **의례적인 행위**

- ①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 부의 금품 제공**
- ② **국가주관 행사, 공공기관 또는 시설의 개소식, 합동결혼식** 등 에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 ③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사교,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회비납부**
- ④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종교시설에 헌금**
- ⑤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및 가족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14. 공직선거법

## ▣ 구호적 자선적 행위

- 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 ② 구호기관 및 대한적십자에 구호 금품 제공
- ③ 장애인복지시설(유료시설 제외)에 의연금품 등 구호금품 제공
-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 제공
- ⑤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및 허가 받아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 등 구호금품 제공
- ⑥ 자선, 구호주관 단체를 통한 소년, 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 구호금품 제공
- ⑦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⑧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 포함)을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15. 행정사무감사 기법

## ▣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의 감사여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보조금을 지급한 부서의 감사를 하면서 보조금의 집행현황 확인, 직접 이해관계 된 자의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등을 통해 간접적인 감사의 효과를 기대

## ▣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감사가 가능한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및 업무 등 소관사항이 정해져 있는 이상 다른 감사(상임)위  
원회에 대한 자료요구 및 감사를 할 수 없음

# 15. 행정사무감사 기법

## ▣ 기초의회에서 광역단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자치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감사대상기관에 한정되므로 기초의회는 자료요구를 할 수 없음

## ▣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감사가 가능한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및 업무 등 소관사항이 정해져 있는 이상 다른 감사(상임)위원회에 대한 자료요구 및 감사를 할 수 없음

# 15. 행정사무감사 기법

## ▣ 수 개의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경우 조사위원회 결정

내용과 성격이 서로 다른 수 개의 특정사안에 대해 동시에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 그 사안마다 각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

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취지이므로 내용과 성격이 다른 내용의 조사는 소관 상위위원회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15. 행정사무감사 기법

## ▣ 감사 중 증인, 참고인, 자료제출요구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증인, 참고인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가 또는 변경하면 되고, 이 경우 **요구일 전 3일전 까지 요구서가 도달**하여야 함



# 15. 행정사무감사 기법

## ▣ 감사 중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는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하는 하나의 활동으로서 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승인사항이므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본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미 개략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기재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감사일정의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등 감사계획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도 변경이 가능할 것임**

만일 감사일정 조정이나 감사반 변경 등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사도중에 변경절차를 거치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 감사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은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함**

# 15. 행정사무감사 기법

## ▣ 행정사무감사 착안 사항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민제보 제도 운영
2. 수의계약 사항 검토(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3. 위원회 운영 실태 검토(회의 개최 일수, 위원의 중복성, 중요사안에 대한 위원 제척 실태)
4. 용역결과의 정책 활용 실태 검토(미활용 부분에 대한 점검)
5.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율 비교 검토(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 결과 활용)

**감사합니다.**